

의안번호	2216688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 7. 14.
추계번호	26A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6억 2,100만원, 2031년에 17억 6,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84억 6,900만원(연평균 16억 9,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16조의8, 부칙 제2조)	1,621	1,657	1,693	1,730	1,768	8,469	1,6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8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 정부는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을 위하여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이하 “에너지복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 에너지복지재단은 법인으로 함(제2항) - 에너지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3항) -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에너지복지 관련 조사·연구 -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외 협력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 7.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 8.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언 9.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10.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에너지복지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4항) - 정부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제5항) -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음(제6항)	
	안 부칙 제2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제16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8(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	—
	안 부칙 제2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추계에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면서 한국에너지재단의 임직원 및 수행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
 - － 재단의 사업비 구조는 크게 1) 정부 등 보조금 사업(효율개선사업비 등), 2) 지정기탁 사업비 등, 3) 일반관리비(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 4)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됨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법안 심사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의 일반관리비 예산을 고려하여 추계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6년도 예산 1,403억 9,000만원 중 일반관리비(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는 15억 8,700만원
 - － 재단의 2026년도 예산 구성은 1) 정부 등 보조금 사업 1,230억 2,200만원(효율개선사업 1,214억 1,600만원, 연탄개선사업 9억 3,600만원 등), 2) 지정기탁 사업비 등 125억 7,700만원, 3) 일반관리비 15억 8,700만원, 4) 이월사업비 32억 400만원임

[표 2] 한국에너지재단의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분	예산	구분	예산
I.정부 등 보조금	123,022	I.정부 등 보조금	123,022
1. 효율개선사업	121,416	1. 효율개선사업비	121,416
2. 연탄개선사업	936	2. 연탄개선사업	936
3. 지자체효율개선사업	555	3. 지자체효율개선사업	555
4. 전력산업기반 기금	89	4. 전력산업기반 기금	89
5. 정부용역사업(아카데미)	26	5. 정부용역사업(아카데미)	26
II.재단 자체 수입	12,375	II.지정기탁 사업비 등	12,577
1. 지정기탁 기부금 사업	10,947	III.일반관리비	1,587
2. 수익형 사업	939	1.인건비	234
3. WEC한국위원회	489	2.경상경비	846
III.기타수입(이월 사업 등)	4,993	3.예비비	507
		IV.이월사업비	3,204
총 계	140,390	총 계	140,390

자료: 한국에너지재단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재단의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7년 이후의 재정소요는 202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26년도 재단의 일반관리비 예산은 인건비 2억 3,400만원, 경상경비 8억 4,600만원, 예비비 5억 700만원 등임
 - 2027년 이후 재단의 운영 관련 비용은 보조금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6년 수준에서 인건비의 경우 명목임금상승률, 경상경비와 예비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6억 2,100만원, 2031년 17억 6,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84억 6,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한국에너지 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안 제16조의8, 부칙 제2조)	1,621	1,657	1,693	1,730	1,768	8,469	1,6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